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. 6. 8 선고 2021가단170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변 론 종 결 2022. 5. 25.

판 결 선 고 2022. 6. 8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, 1984. 1. 12.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접수 제83호로 마친,

나.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, 1984. 1. 11.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접수 제83호로 마친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85. 8. 13. 혼동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기록에 비추어 일부 오기임이 명백한 부분 등은 적절히 선택한다).

이 유

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 ① 1984. 1. 11. 내지 같은 달 12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,650만원, 채무자 E, 근저당권자 망 F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(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다. 이하 통틀어 ‘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’라 하고, 해당 등기가 표상하는 근저당권을 ‘이 사건 각 근저당권’이라 한다)가 각 마쳐졌다. ② 그런데 망인은 1985. 8. 13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1984. 2. 28.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. ③ 이후 원고는 1985. 11. 30.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서 1985. 12. 2.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④ 망인은 2015. 7. 7. 사망하였고, 망인의 자녀인 G, H와 망인의 누이인 I가 2015. 9. 10. 망인으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2015. 12. 29. 수리되었다(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5느단466). ⑤ 그밖에 망인의 친족관계, 망인의 과거 혼인관계와 이혼 시점, 해당 친족들의 사망 여부 및 그 시점 등은 별지 ‘상속인의 가계도’ 기재와 같다.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살핀다. 1985. 8. 13.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모두 망인에게 귀속됨에 따라, 위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. 한편 망인은 사망할 당시 혼인상태에 있지 않았고, 망인의 직계존비속은 모두 그 전에 사망하거나 망인으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하였으며, 망인의 형제자매 중 I도 망인으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하였으니, 결국 망인의 형제자매 중 망인으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J만이 원래대로라면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이 될 사람이었다. 그런데 위 J 및 J의 두 자녀 중 1명인 K도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먼저 사망하였으므로, J의 다른 자녀 L, 그리고 K의 자녀이자 J의 손자인 M 및 피고 C가 J의 순위에

갈음하여 망인을 대습 또는 재대습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(상속비율: L 1/2, 피고 C 1/4, M 1/4).

이후 L이 2019. 6. 12. 사망함에 따라, L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(1/2)을 그의 유일한 자녀인 피고 D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(L은 사망 당시 기존 배우자들과 이혼한 상태였다), M도 2018. 3. 19. 사망함에 따라, M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(1/4)을 M의 유일한 형제자매인 피고 C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(M은 혼인하지 아니하여 자녀 없이 사망하였으며, 당시 M의 직계존속도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). 그리하여 최종적으로,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 명의를 비롯한 망인의 재산 내지 지위 등이 상속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각각 1/2씩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, 위 각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,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에 대한 1985. 8. 13. 혼동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[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, N, O, P, Q 및 피고 D 5명이 망인의 지위 등을 최종 상속하였다는 전제에서, 원고가 위 5명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(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가단617)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다. 그러나 법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기존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(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). 그리고 위 확정판결의 경우 각 피고별로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대상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. 그밖에 위 확정판결의 내용, 이 사건 변론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,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 명의 등을 상속받은 자의 범위를 위 확정판결과 달리 인정하는 것이나, 대상지분을 특정한 뒤 그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,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반한다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소 제기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].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여동근

별지